

## 유럽공동매매법(CESL)의 법적 특성과 국제상사계약에의 적용가능성

### Legal Characteristics and Applicability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to the Common European Contract Law

심종석(Chong-Seok Shim)<sup>a</sup>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부교수

#### 목차

Abstract

- I. 머리말
- II. CESL의 의의와 주요 내용
- III. CESL의 법적 지위와 특징
- IV. 국제상사계약에의 적용가능성
- V. 맺음말

References

#### Abstract

*The CESL(Common European Sales Law), published in October 2011, is the result of a long standing project for the European Commission. For over a decade experts and academics have been looking at the issue of European contract laws during which time a number of different approaches and proposals have been developed and considered. The Commission's current proposal for CESL attempts to resolve barriers to cross-border trade by introducing a new optional contract law. They suggest that these barriers are caused by the divergence of contract laws across the member states which significantly hamper cross border trade, the smooth functioning of the single market and ultimately stifle potential growth within the EU. The aim behind CESL is to provide a comprehensive set of uniform contract law rules covering the practical international contract, which would form part of the national law of each member state as a second regime of contract law. This proposed alternative regime would be available for cross-border B2C contracts and cross-border B2B contracts where at least one of the businesses is a small or medium enterprise. The Commission's impact assessment on the CESL acknowledges that there are a number of barriers to cross border trade. They argue that by tackling the challenges presented by the divergent contract laws of the member states they will see an increase in cross border trade through reduced transaction costs for traders and increasing choice for consumers.*

• Received 7 July 2015, Revised 30 July 2015, Accepted 26 August 2015.

<sup>a</sup> E-mail: cyrus@daegu.ac.kr

© 2015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Keywords:** Common European Sales Law, Contract Law, International Contract, Cross Border Trade, B2C Contract, B2B Contract

**JEL Classifications:** K12, K22, K33

## I. 머리말

20세기 후반 국제경제질서의 환경변화 가운데 유럽연합(EU)의 창설은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 내지 대상으로 취급하기에 손색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곧 지역적 차원에서 유럽의 통합[1994년]과, 경제적 차원에서 단일경제권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은[1999년] 명실 공히 세계최대의 단일시장이 구축되었다는 시각에서 특단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현재 단일통화[EUR]의 발행으로 통합·일원화된 EU는 경제·사회 등의 전 분야에서 총체적이고도 전 방위적인 통합발전을 의욕하고, 이에 최대경제권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순기능적 경제환경은 회원국 간 각양의 무역장벽을 해소하여 계약주체 간 자유로운 상거래를 보장하고 있음과 동시에, 계약의 목적으로서 물품과 서비스 및 그 밖의 물적 효용과 기대이익의 창출을 견인하고 있는 차제에 있다.

그러나 EU 통합의 시너지 효과에도 불구하고, 법제적 시각에서는 역내 단일경제권을 적절히 규율할 수 있는 통일법의 부재로 현재까지 상당한 역기능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역기능은 무엇보다도 다양한 법체계의 공존에 따른 회원국별 실정법상의 법리적 시각차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아가 당해 역기능은 역내 무역환경에 상당한 장애로 기능하였는데, 예컨대 거래의 과정에서 필요외적 비용을 발생케 하거나, 예견가능성에 반하는 법적용의 혼선, 계약 또는 매매법의 상이로부터 비롯된 상거

래의 좌절과 회의 등을 이에 결부할 수 있다(Wymenga et. al., 2012).

이상의 역내 역기능적 환경에 대응하고자 ‘EU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는 통일된 공통매매법의 실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그간 10차례의 공식 회합을 통해 마침내 2011년 10월 소위 ‘유럽 공통매매법’(Common European Sales Law, 이하 ‘CESL’<sup>1)</sup>)을 성안하고 이를 EU 의회에 상정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CESL은 공식 발효를 목전에 두고 각국의 비준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역내 통일 공통매매법으로서의 지위를 담보하고 있는 CESL은 회원국 간 물품 및 이와 관련한 서비스의 매매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의 자유로운 상거래 활동을 부양하기 위한 취지에서 EU 회원국별 실정법에 선택적으로 보충 또는 채택할 수 있도록 제안된 특징이 있다.<sup>2)</sup> 나아가 협상력이 취약한 소비자 및 중소기업의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이

1) 입법안[proposal]으로서 ‘CESL’은 경우에 따라 ‘CESL(p)’로 표기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최종입법안으로서의 채택에 주안점을 두고 이하 ‘CESL’로 통일한다.

2) CESL은 그 체계에 있어 ‘규정’(regulation)과 ‘부속서’(annex)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경우 CESL은 186개 조문으로 입안되어 당해 부속서에 편입되어 있다. 이 경우 EU 법안(legislation)은 3가지의 기본유형이 있는데, 곧 ‘규정’(regulation), ‘지침’(directives) 그리고 ‘결정’(decis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경우 규정은 국내법과 유사하나, 모든 EU 회원국에 적용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으며, 지침은 일반규칙을 정한 것으로 회원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내법에 수용될 수 있다. 결정은 특별한 이슈를 포함하여 특별히 언급된 대상 또는 조직에 대하여 다룬다. 이상의 구분은 EC 유관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음을 참고한다.

에 부합할 수 있는 강행규정 및 각양의 부차적 법적 기준을 명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용상 역내 회원국에 한정하지 않고 역외 국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Borchardt, 2010; European Commission, 2011).

본고는 이상과 같은 CESL의 위상을 중시하고, 나아가 EU 역내 투자기업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이에 진출을 의욕하고 있는 기업 및 실무계를 향하여 CESL의 의의와 특징 그리고 ‘국제상사계약’(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의 적용가능성에 기한 유의점 내지 시사점을 분석하여, 실무계를 향하여 EU를 대상으로 한 신속·민활한 국제상거래를 견인함에 있어, 나아가 합목적적 차원에서 법적 안정성 보장은 물론 당해 국제상사계약에 있어 각양의 이해보전을 위한 예견가능성 제고에 일말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고의 논제에 결부하여 국내 주요 선행 연구를 개략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Kim Chin-Woo (2012)는 CESL의 선행입법으로서 ‘공통참조기준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에 따른 계약 내용의 통제에 관한 법적 기준을 추론하여 이에 상당한 법률효과를 명정하고 동법안의 실질적 의의를 부각하고 있고, Pak Hee-Ho (2014)는 CESL상 소비자 철회권과 관련 국내의 제반 입법례와의 비교를 통하여 그 실질적 함의 내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Paek Kyoung-Il (2013)은 계약체결에 관한 CESL의 규정내용을 중심으로 이를 각국의 제반 실정법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실무적용상 유의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 밖에 Sung Jun-Ho (2014)는 CESL상의 불공정한 계약조항, Shin Dong-Hyeon (2014)은 약관의 충돌에 관한 CESL의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는 대개 법

리적 차원에서의 기준 내지 요건 등에 관한 법적 쟁점을 우리 민법을 포함한 각국의 실정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당해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본고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배경에 두고 국제상학적 차원에서의 접근을 통해 논제에 기한 소기의 성과를 개진하고자 한다.

## II. CESL의 의의와 주요 내용

### 1. 법적 기능과 제정취지

#### 1) 법적 기능

그간 EU 역내 통일계약법을 성안하기 위한 EC의 노력은 무엇보다도 경제적 약자로서 소비자를 포함하여 협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데 집중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CESL의 원안으로 기능한, 소위 ‘공통참조기준’(Common Frame of Reference, ‘CFR’<sup>3)</sup>)과, ‘공통참조기준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sup>4)</sup>)은 대표적 입법결실로 취급할 수 있다. 여기서 이들 입법내용에 특별히 B2B 계약을 포함한 이유는 국제상거래에 임하고 있거나 임하고자 하는 역내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상거래 과정과 절차의 간소화로부터 필요외적 비용을 절감할

3) CFR은 EC의 재정지원을 통해 착수되었는데, CFR의 목적은 역내 계약법분야의 통일을 통해 이를 EU의 통일법 제정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함에 두었다. CFR의 주요 내용은 법적 용어의 통일, EU 규정개정 시 원용할 수 있는 기본원칙 및 일관성 있는 법리적 사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4) 2008년 EU 역내 계약법 전문가는 학리적인 측면에서의 DCFR을 EC에 제출하였는데, DCFR은 계약법의 원칙, 정의 및 모델규칙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당해 규칙의 법리적 해제에 구체적인 사례를 접목하여 국내법적 체계, 현재의 공통법 또는 국제법에 있어서 법적 위치를 명료히 하고 나아가 개별사안에 대한 유의사항을 추보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었다. EC는 이로써 복잡다단한 국내법에 우선하여 하나의 통일법체계를 통해 그 경제적 실익을 담보하기 위함에 궁극적 입안취지를 두었다(European Commission, 2011).

이후 CFR과 DCFR을 기초로 2011년 10월 최종 성안된 CESL은 ‘물품의 매매’(sale of goods) 및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supply of digital content) 그리고 ‘이와 관련한 서비스의 매매’(related service) 등에 관한 법적 기준을 역내 회원국의 실정법에 선택적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제안되었는데, 이 경우 CESL은 ‘본문’(regulation)<sup>5)</sup> 및 ‘부속서’(annex) 형태로 최종 성안되었다. 여기서 본문은 CESL 제정 배경 및 적용원칙에 대하여, ‘부속서 I’은 CESL의 186개 조문을, ‘부속서 II’은 국경 간 소비자거래에서 소비자의 주요 권리를 요약한 ‘표준정보통지서’(standard information notice)로 삼분되어 있다(Micklitz, 2012).

EC는 역내 기업들이 회원국의 다종다양한 계약 또는 매매법의 상이 또는 충돌로 인한 거래의 좌절과, 재화의 효용가치 상실을 극복하기 위한 법제적 기반 인프라로서 CESL의 법적 기능을 주창하였다. 이에 CESL은 기업은 물론이고 소비자 계약에도 적용 및 원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 이를테면 EU 역내 국가 간 그리고 역외 국가와의 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고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도 물품매매,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 및 이에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등 폭넓고 광범위하게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의 법안에 B2C, B2B 분야는 물론이고, 그 대상에 있어 물품 외에

도 디지털 콘텐츠 및 서비스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일부 회원국 및 법계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 차제에, 나아가 조문체계에 있어 상당한 법적 문제점 또한 부각되었다(Beale, 2012). 특히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에는 사전 타당성조사에 따라 그 문제점이 상당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11). 또한 CESL은 법인격 및 행위능력의 결함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계약의 무효성, 불법성 또는 비도덕성, 계약 내용에 대한 언어의 해석, 무차별의 폭과 범위, 무권대리 및 다수의 채무자 및 채권자의 법률효과, 양도·상계 및 합병을 포함한 당사자의 권리득실, 소유권 이전, 지적재산권 및 불법행위 등의 일련의 법적 문제 등을 포함하여, 실무적 관점에서, 법정지, 서비스 및 그 집행에 관한 법적 기준 등에 대하여도 다루지 않고 있다는 사실 또한 지적되었다.

그러나 EC는 당초 의도된 CESL은 이처럼 광범위한 모든 사항을 일일이 규정하기 위한 것에 목적을 둔 통일법이 아니고, 오로지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이해보전을 위한 특단의 입법을 국내법의 일부로 보충·선택할 수 있도록 의도되었음을 주창하고 이상의 각계 의견을 일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CESL은 계약당사자로서 소비자 내지 중소기업에 주안점을 두고, 그들 자치에 따라 선택·적용할 수 있는 적용법으로서 그 필요성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시각에서 일견 국제상사계약에 있어서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법적 한계 또한 내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 2) 제정취지

EU의 통합 이후에도 역내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에는 상당한 장애가 상존하였다. 당해 장애는 EU 회원국에 소재한 기업 간 무역이

5) 이하 CESL의 ‘본문’(regulation)은 기술 및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부속서’(annex) I에 첨부된 개별조문과의 구분을 위하여 ‘CESL 총칙’ 또는 ‘총칙’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일부 특정회원국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하였는데, 이를테면 세금부과의 복잡성, 필요외적 행정처리, 물품의 인도와 인도상의 위험이전, 소비자보호 및 개별국가의 적용법의 상이 등을 이 같은 장애의 주요 요인으로 예시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은 무엇보다도 B2B 및 B2C 거래를 적의 규율할 수 있는 통일법의 부재 그리고 EU 회원국 간 상이한 계약 또는 매매법의 존재가 가장 큰 원인으로 기능하였음을 시사한다.

역내 계약주체별 각양의 계약으로부터 비롯되는 적용법은 특히나 국경을 넘어서는 무역에 있어서는 필수불가결한 법기능상의 수단으로 취급된다. 곧 당해 계약으로부터 계약당사자 간의 이해가 충돌되는 경우 이를 적의 조정·규율할 수 있는 통일법의 존재는 계약당사자 저마다의 이해를 적절히 보전할 수 있는 첩경이 될 수 있으나, 달리 당해 통일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특히 국제상사계약에 있어서는 이 같은 문제가 상당한 법적 걸림돌로 부각될 수 있기에 충분할 것인데, 통상 이는 법적용상 장애로 취급된다.

계약법상 적용법의 부존재는 수출지향적인 무역기업들의 기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애로 취급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장애는 필요외적 현저한 비용의 발생 내지 증가를 초래하여, 그 결과 원가절감을 통한 대외경쟁력, 시장장출효과, 물품에 대한 R&D 내지 효율적인 영업이익 재분배 차원에서 다수의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당해 적용법이 강행적인 소비자보호법과 상이하거나 상호 충돌할 경우에는 특별히 B2C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경제활동을 현저히 위축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하

다. EU 역내 이 같은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실례로, 계약주체에 적용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규정’[EC Regulation No. 593/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June 2008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Rome I), ‘EU 593/2008’]에 비추어(Art. 6),<sup>6)</sup> 기업은 다른 회원국에 있는 소비자에게 자신의 물품 내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수익자로서 소비자에 대한 보호수준이 매우 높고, 나아가 본조에 의해 그 수준을 이탈할 수 없는 소비자 국가의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별단의 적용법이 선택된 경우에도 이는 다를 것이 없다고 명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역내 기업들은 소비자 보호법의 수준이 자신들이 기대한 것에 우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6) EC 「593/2008」, Art. 6(소비자계약): “1. (...) 자연인이 자신의 직업 이외의 목적, 곧 소비자 자격으로 자신의 직업상 행하는 타인과 체결한 계약은 소비자가 자신의 상거소를 둔 국가의 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다만 직업상이라 함은, (a) 소비자가 상거소를 둔 국가에서 자신의 상업상 또는 직업상 활동을 추구하는 것, 또는 (b)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당해 국가 또는 당해 국가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 대한 활동을 감독하고 당해 계약이 그러한 활동의 범주에 해당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 거래당사자는 1의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은 적용법이 없는 경우 1에 기초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에 의거,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는 규정에 의해 허용된 보호를 소비자로부터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3. (...). 4. 1, 2는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a)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자기가 상거소를 가진 국가가 아닌 국가에 독점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서비스 공급계약, (b) 패키지여행, 패키지휴일, 패키지시간의 의미상 패키지여행 관련 계약 이외의 운송계약, (c) (...) 부동산 대물권리 등의 기준에 따라 부동산 사용권에 대한 계약 이외의 부동산 차용권리, (d) 금융증권을 구성하는 권리와 의무 및 양도성 증권의 공개입찰 및 공개인수입찰 발행 또는 청약을 다루는 조건을 구성하는 권리와 의무 (...).”



있는데, 이는 고스란히 필요외적 비용의 발생 내지 거래를 좌절케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Bisping, 2013).

다른 한편 ‘전자거래’(electronic transactions)에 있어서도 당해 적용법상 타방 소비자 국가의 강행적 소비자계약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그 처지는 마찬가지다. 현재 EU 수준에서 각국 간 소비자보호법의 법적 조화는 어느 정도 통일적 시각을 견지하고는 있으나, 그럼에도 이 같은 장애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Basedow, 2012). 예컨대 EU의 규정요건 준수방법, 적용법의 선택, 소비자보호의 수준 및 법적 기준 등의 문제는 매우 첨예하고도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계약법 관련 장벽은 소비자에게도 적잖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곧 역내 무역규모의 둔화 내지 감소는 물품 및 재화의 가격경쟁력을 저해하여 이로 인하여 외국기업들은 자신들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가 쉽지 않고, 물품의 매매 또한 B2B 간의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는 높은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경 간 전자거래의 경우 대개 유리한 가격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전자거래를 꺼려하고 있음이 통상이다. 이는 마찬가지로 계약법 관련 사항으로 귀결되는데, 이를테면 하자있는 물품의 구입, 물품의 반환, 물품대금지급의무에 대한 불합리한 약관 등이 개입된 경우 당해 소비자보호법에 기하여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다(Shin Dong-Hyeon, 2014).

CESL의 입법배경에 기하여, EU 회원국 간 계약법의 상이는 기업과 소비자로서 하여금 단일시장의 순기능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로 기능하였다. 다만 이러한 계약법 관련 장애는 만약 계약이 계약당사자의 소재지 여부에 상관없이 통일계약법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 그 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CESL은 이러한 계약법 관련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EC에 의해 성안되었다. 곧 CESL은 계약당사자의 자치에 기하여 이를 적용·원용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로 부터 역내 무역을 신속·민활하게 도모할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 당해 거래로부터 필요외적 비용의 절감, 그 밖의 계약법 관련 장애를 제거할 수 있는 법적 인프라로서의 지위를 내재하고 있다(Grundmann, 2013).

이 경우 CESL은 전술한 바와 같이 회원국 간 기존 국내계약법의 개정을 요구하지 않고, 회원국의 계약법 체제하에서 보충 및 선택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배려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CESL은 회원국 간 및 역외무역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적용법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장해 두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1).

### 3. 적용범위

CESL 총칙[regulation]<sup>7)</sup>에서는 CESL이 역내 회원국 간 실정법에 보충할 수 있는 선택적 권고사항이며(European Parliament, 2014), 동시에 CESL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7) 이하 ‘규정’(regulation)은 CESL 편제에 따라 편의상 ‘CESL 총칙’ 또는 ‘총칙’이라 칭한다. 이 경우 총칙은 소위 ‘chapeau’라고도 칭하여지며, 이는 CESL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법적 문서로 역내시장에 관한 법적 기초로서 ‘EU 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이하 ‘TFEU’)의 존중, ‘보충성 및 비례성 원칙의 중요성’, ‘인적·물적·영역적 범위’, ‘국경 간 거래에 대한 적용 메커니즘’, ‘제3국’의 위치 등을 다루고 있다.

내에서 물품의 매매,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 관련된 서비스의 ‘무역계약’[(cross-border contracts)]에 적용된다(Art. 3; optional nature of the CESL).<sup>8)</sup> 이 경우 B2B 계약으로 취급되기 위해서는 당해 기업의 ‘영업소’(business premises)가 각각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무역계약은 적어도 일방이 회원국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 달리 B2C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상거소’(habitual residence), 물품의 인도지 또는 대금청구지가 기업의 영업소 이외의 국가에 소재하고 또한 이들 국가 중 하나는 회원국이어야 한다(Art. 4; cross-border contracts). 이 같은 적용범위의 특성은 국제상사계약에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한 결과로서 당해 조문 내용은 주지하듯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한 선도적 입법례로서 그 지위를 점하고 있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과의 조화로운 선택적 병존을 모색하기 위한 특단의 결과로 보인다.

한편 CESL이 적용되는 계약의 종류는 매매계약을 위시하여 전자상거래의 경우 작성·저장·전송되고 재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을 위한 계약에 한정하고 있다. 나아가 상기에 언급한 계약을 제외한 ‘혼합목적의 계약’(mixed-purpose contracts)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기업과 소비자 간 계약에서 신용거래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Art. 6; exclusion of mixed-purpose contracts and contracts linked to a consumer credit).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계약 전 정보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의 구제수단과

(Art. 11; consequences of the use of the CESL), 회원국으로 하여금 기업의 영업소 또는 B2C 계약의 경우 기업의 영업소, 소비자의 상거소, 물품인도지 및 대금청구지가 회원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그 적용을 허용하고 있음은 이에 부수한다(Art. 13; member states’ options).

#### 4. 구성체계

##### 1) 총칙

EC에 의한 CESL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총칙’과 CESL의 실제적 규정을 담고 있는 ‘부속서 I’ 그리고 ‘표준정보통지’를 다루고 있는 ‘부속서 II’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총칙에는 제정취지를 비롯한 총 1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차례로 요약·분설하면, CESL의 목적 및 대상(Art. 1; objective and subject matter), 용어의 정의(Art. 2; definitions), 물품의 매매 및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 및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무역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선택권(Art. 3; optional nature of the CESL), 무역계약에 한정되는 범위(Art. 4; cross-border contracts), 물품의 매매, 디지털 콘텐츠 및 관련된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한 실질적 계약범위(Art. 5; contracts for which the CESL can be used), 적용범위에서 혼합목적계약과 설치거래 등 적용배제사항(Art. 6; exclusion of mixed-purpose contracts and contracts linked to a consumer credit), B2C에 적용되는 개인용품의 범위와 B2B의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은 중소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요건(Art. 7; parties to the contract), CESL 적용합의의 요건(Art. 8; agreement on the use of the CESL) 등을 다루고 있다. 이 경우 B2C 계약

8) CESL상 ‘국경 간 계약’(cross border contract)이라는 용어는 본고의 상무적 시각을 중시하여 달리 그 의미가 왜곡 또는 변질되지 않음을 전제하고 이 하 ‘무역계약’으로 통칭하여 사용한다.

은 소비자의 동의가 전제되는 경우 그 유효성을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B2C 계약 시 정보제공요건(Art. 9; standard information notice in contracts between a trader and a consumer) 등을 정하고 있다. 이에 부수하여 Art. 8 내지 Art. 9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기업이 위반한 경우 회원국에게 이에 상당한 제재조치를 요구하고 있고(Art. 10; penalties for breach of specific requirements), CESL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안이 적용되고, 회원국의 국내법은 일절 배제됨을 명시하고 있다(Art. 11; consequences of the use of the CESL). 여기서 Art. 11에 따라 CESL을 계약의 적용법으로 선택하는 경우 계약 전 정보 제공에 대한 의무의 준수가 소급하여 적용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구제수단의 소급효가 인정된다. 또한 CESL이 역내 단일 시장 서비스에 관한 '2006/123/EC지침'(DIRECTIVE 2006/12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06 on Services in the Internal Market)의 정보요건을 침해하지 않고(Art. 12; information requirements resulting from the services directive), 회원국 국내 및 B2B 계약에도 상거래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국에게 별단의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Art. 13; member states' options). 또한 역내 CESL에 의한 판결의 집적을 위하여 CESL이 적용된 개별회원국의 판결내용을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있고(Art. 14; communication of judgments applying this regulation), 검토조항(Art. 15; review), CESL의 발효시기(Art. 16; entry into force and application) 등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Clive, 2012).

## 2) 일반규정

‘부속서 I’에 수록된 CESL은 I에서 VIII까지 총 8부, 2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Part I (introductory provisions)은 계약법의 일반 원칙으로서 모든 거래당사자는 신의 및 공정 거래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CESL상 소비자 보호와 같이 강행적이라고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유 원칙’(freedom of contract)에 의거 CESL을 변경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Part II (making a binding contract)는 유효한 계약내용에 관한 것으로 당사자가 계약체결을 위한 필수정보를 알 권리에 대한 규정과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의 방법을 정하고 있다. 이 부분은 소비자에게 원거리 및 장외계약에 대한 철회권을 보장하고 있는 특별규정으로 기능한다(Pak Hee-Ho, 2014). 또한 착오·사기·강박 또는 부당행위의 경우 계약해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Part III (assessing what is in the contract)은 계약내용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 곧 계약내용이 의심스러운 경우 해석기준을 일반규정으로 명정하고 있다. 계약내용이 불공정하여 무효로 취급될 수 있는 사유, 계약내용 및 효과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Sung Jun-Ho, 2014).

Part IV (obligations and remedies of the parties to a sales contract or a contract for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는 매매계약 당사자의 의무 및 구제에 관한 것으로 매매계약, 디지털 콘텐츠 공급계약에 대한 특별규칙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그리고 이에 결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의 불이행에 대한 구제도 다루고 있다.

Part V (obligations and remedies of the parties to a related service contract)는



관련된 서비스 계약당사자의 의무 및 구제에 대한 것으로 물품의 매매,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과 관련하여 설치·보수 또는 유지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다. 아울러 이 경우 어떤 특별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특히 당해 계약 하에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의 취급 등을 다루고 있다.

그 밖에 Part VI (damages and interest)은 손해배상금 및 이자에 대한 것으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지급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이자에 대한 보충적인 공통규칙을 다루고 있고, Part VII (restitution)은 원상회복에 관한 것으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될 때 반환하여야 하는 것에 대한 규칙, Part VIII (prescription)은 소멸시효에 관한 것으로 계약 하에서 권리행사에 대한 시간경과 효과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부록 1’은 원거리 또는 장외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기업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철회지침모델을, ‘부록 2’는 철회양식을 제공하고 있다. ‘부속서 II’는 CESL에 대한 표준 정보통지에 관한 내용으로, 이는 CESL의 사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업이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다. CESL 전체조문에 대한 구성체계를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1. Contents of CESL

| Contents                                                                                        | Article |
|-------------------------------------------------------------------------------------------------|---------|
| Part I: Introductory provisions                                                                 |         |
| Chap. 1: General principles and application                                                     |         |
| Sec. 1: General principles                                                                      | 1-3     |
| Sec. 2: Application                                                                             | 4-12    |
| Part II: Making a binding contract                                                              |         |
| Chap. 2: Pre-contractual information                                                            |         |
| Sec. 1: Pre-contractual information to be given by a trader dealing with a consumer             | 13-22   |
| Sec. 2: Pre-contractual information to be given by a trader dealing with another trader         | 23      |
| Sec. 3: Contracts to be concluded by electronic means                                           | 24-27   |
| Sec. 4: Duty to ensure that information supplied is correct                                     | 28      |
| Sec. 5: Remedies for breach of information duties                                               | 29      |
| Chap. 3: Conclusion of contract                                                                 | 30-39   |
| Chap. 4: Right to withdraw in distance and off-premises contracts between traders and consumers | 40-47   |
| Chap. 5: Defects in consent                                                                     | 48-57   |
| Part III: Assessing what is in the contract                                                     |         |
| Chap. 6: Interpretation                                                                         | 58-65   |
| Chap. 7: Contents and effects                                                                   | 66-78   |
| Chap. 8: Unfair contract terms                                                                  |         |
| Sec. 1: General provisions                                                                      | 79-81   |
| Sec. 2: Unfair contract terms in contracts between a trader and a consumer                      | 82-85   |
| Sec. 3: Unfair contract terms in contracts between traders                                      | 86      |

| Contents                                                                                                             | Article |
|----------------------------------------------------------------------------------------------------------------------|---------|
| Part IV: Obligations and remedies of the parties to a sales contract or a contract for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 |         |
| Chap. 9: General provisions                                                                                          | 87-90   |
| Chap. 10: The seller's obligations                                                                                   |         |
| Sec. 1: General provisions                                                                                           | 91-92   |
| Sec. 2: Delivery                                                                                                     | 93-98   |
| Sec. 3: Conformity of the goods and digital content                                                                  | 99-105  |
| Chap. 11: The buyer's remedies                                                                                       |         |
| Sec. 1: General provisions                                                                                           | 106-108 |
| Sec. 2: Cure by the seller                                                                                           | 109     |
| Sec. 3: Requiring performance                                                                                        | 110-112 |
| Sec. 4: Withholding performance of buyer's obligations                                                               | 113     |
| Sec. 5: Termination                                                                                                  | 114-119 |
| Sec. 6: Price reduction                                                                                              | 120     |
| Sec. 7: Requirements of examination and notification in a contract between traders                                   | 121-122 |
| Chap. 12: The buyer's obligations                                                                                    |         |
| Sec. 1: General provisions                                                                                           | 123     |
| Sec. 2: Payment of the price                                                                                         | 124-128 |
| Sec. 3: Taking delivery                                                                                              | 129-130 |
| Chap. 13: The seller's remedies                                                                                      |         |
| Sec. 1: General provisions                                                                                           | 131     |
| Sec. 2: Requiring performance                                                                                        | 132     |
| Sec. 3: Withholding performance of seller's obligations                                                              | 133     |
| Sec. 4: Termination                                                                                                  | 134-139 |
| Chap. 14: Passing of risk                                                                                            |         |
| Sec. 1: General provisions                                                                                           | 140-141 |
| Sec. 2: Passing of risk in consumer sales contracts                                                                  | 142     |
| Sec. 3: Passing of risk in contracts between traders                                                                 | 143-146 |
| Part V: Obligations and remedies of the parties to a related service contract                                        |         |
| Chap. 15: Obligations and remedies of the parties                                                                    |         |
| Sec. 1: Application of certain general rules on sales contracts                                                      | 147     |
| Sec. 2: Obligations of the service provider                                                                          | 148-152 |
| Sec. 3: Obligations of the customer                                                                                  | 153-154 |
| Sec. 4: Remedies                                                                                                     | 155-158 |
| Part VI: Damages and interest                                                                                        |         |
| Chap. 16: Damages and interest                                                                                       |         |
| Sec. 1: Damages                                                                                                      | 159-165 |
| Sec. 2: Interest on late payments: general provisions                                                                | 166-167 |
| Sec. 3: Late payments by traders                                                                                     | 168-171 |

| Contents                                               | Article |
|--------------------------------------------------------|---------|
| Part VII: Restitution                                  |         |
| Chap. 17: Restitution                                  | 171-177 |
| Part VIII: Prescription                                |         |
| Chap. 18: Prescription                                 |         |
| Sec. 1: General provision                              | 178     |
| Sec. 2: Periods of prescription and their commencement | 179-180 |
| Sec. 3: Extension of periods of prescription           | 181-183 |
| Sec. 4: Renewal of periods of prescription             | 184     |
| Sec. 5: Effects of prescription                        | 185     |
| Sec. 6: Modification by agreement                      | 186     |

### III. CESL의 법적 지위와 특징

#### 1. 규율범위

CESL은 EU 역내 계약법을 개정하지 않고, 각 회원국에서 채택하는 경우 특별법의 법적 지위를 보유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이로써 개별회원국의 국내법과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요컨대 CESL은 무역계약에 있어 법적용상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적용된다. CESL은 당초 법안 제정 시 TFEU의 기준에 부합하게 성안되었는데(Art. 114),<sup>9)</sup>

9) TFEU, Art. 114: “1. TFEU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 EU 의회 및 EC는 통상적인 법률절차에 따라 행동하고 경제·사회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TFEU의 목적으로서 역내 단일시장의 설립 및 기능을 가지는 회원국에서의 법·규정 또는 행정조치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규정의 조화를 위한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2. 1은 계약주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련하여 금전적 규정에 적용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고용된 자의 권리 및 이익에 관련된 금전적 규정에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3. EC는 건강·안전·환경보호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전항에 있는 제안에 있어서, 과학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새로운 발전을 특별히 고려하여 높은 수준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 또한 EU 각각의 권한 하에서, EU 의회 및 EC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모색하여야 한다. 4. 만약 EU 의회 및

곧 CESL은 역내 공동매매법의 형태로 소비자보호규칙을 포함한 일체형의 계약법으로서 역내 회원국의 특별법의 형태로 수용할

EC에 의하여, (...) 조화조치를 채택하고 난후, 회원국이 (...) 주요 필요성의 근거로 또는 환경이나 근무환경과 관련하여 자국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회원국은 EC에 본조항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성과 이러한 규정을 EC에 통보하여야 한다. 5. 또한 4항의 침해 없이 EU 의회 및 EC에 의하여, (...) 조화조치를 채택하고 난 후, 회원국이 조화조치의 채택 이후 발생하는 당해 회원국의 특정분야에 대한 근거로서 환경 또는 작업 환경 관련한 새로운 과학적인 증명에 기초한 자국의 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회원국은 당해 규정안 및 규정도입에 대한 이유를 EC에 통보하여야 한다. 6. EC는 4와 5에 정한 바대로 통지를 받은 후 6월 이내 당해 통지가 회원국 간에 무역에 대한 위장 제한 또는 독단적인 차별의 방법인지 그리고 역내 단일시장의 기능에 장애가 되는 지를 확인한 후 회원국 자체의 규정을 승인 또는 거절하여야 한다. 만약 4와 5에 있는 회원국 자체 국내규정을 정해진 기한 안에 EC의 결정이 없는 경우, 4와 5에 언급된 회원국 자체 국내규정은 승인된 것으로 본다. (...) 7. 6에 의거, 회원국이 조화조치에서 벗어나는 자국의 규정을 유지하거나 도입하기 위하여 승인받은 경우 EC는 당해 조치에 대한 적용규정을 제안할지의 여부를 즉시 검토하여야 한다. 8. (...). 9. (...) EC 및 개별회원국은 만약 본조에서 정한 권한을 다른 회원국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판단되는 경우 당해 사안을 EU 사법재판부에 제기해야 한다. 10. (...).”

수 있도록 하여 국제사법규칙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국내법으로서 그 지위를 보유한다 (Kuipers, 2008).

이러한 해결책은 회원국의 국내법 간 법리적 차이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장애를 제거하고 또한 무역계약체결의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로 하여금 법적 상이 내지 복잡성에 기한 추가비용 절감, 소비자의 권리보호 및 구매력 상승 등의 효과를 배경에 두고 있다. TFEU에 따라 CESL은 기존 역내 각양의 소비자법체제하에서 소비자의 보호수준을 제고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일련의 강행규칙을 존치해 둌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를 보장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CESL은 역내 EU 법률에 기초하여 유관법률을 해하지 않는 ‘보충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에 부합하게 성안된 특징이 있다 (Kuipers, 2008).

한편 CESL은 역내 거래에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 개별회원국 국내법에 의해 다루어지는 분야는 배제된다. 또한 CESL은 계약당사자의 합의를 기초로 각국 법체계 및 상관습 등을 방해하지 않고, 역내 계약법의 최소기준을 명정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그 실효성을 부각할 수 있다.

## 2. 목적 및 대상

CESL의 목적은 EU 역내 통일계약법을 이 용가능하게 함으로써 EU 단일시장의 설립조건 및 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에 두고 있다. CESL은 전술한 바와 같이, 물품매매 및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 및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무역거래에 적용된다. 결국 CESL은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법적 확실성과 예견가능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제거함으로써 역내 기업들로 하여금 CESL을 통해 실질적

기대의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내 통일법으로서의 지위를 표창하고 있다 (Epstein, 2013). 나아가 B2C 계약과 관련하여 CESL은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를 천명하고 있음과 동시에, 이로부터 역내 시장에서의 소비자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총체적인 경기부양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인프라 제공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Kornet, 2012).

## 3. CESL의 선택과 무역계약

계약당사자는 CESL이 물품의 매매,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무역계약을 CESL의 적용범위에 기한 영역, 물적·인적 범위 내에 한정한다고 합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무역계약은 CESL의 목적상 B2B 계약에 있어, 만약 그들의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해 있거나 또는 적어도 일방의 영업소가 회원국에 소재한 경우, B2C 계약에 있어 소비자가 표시한 주소·물품송부처 또는 대금지급지가 기업의 영업소가 소재한 이외의 국가에 위치해 있거나, 이러한 국가의 하나가 회원국인 경우를 총칭한다. 또한 계약이 기업의 지점·대리점 등에 의하여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지점 또는 대리점 등이 소재한 장소가 그 기업의 영업소로 취급된다.

## 4. 적용상의 요건과 배제

CESL은 물품매매계약, 디지털 콘텐츠가 대금지급과 교환으로 공급된 것과는 상관없이 또는 사용자가 저장·처리·접근할 수 있는 유형의 매체로 제공되는 여부와 상관없이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을 위한 계약과, 별도의 물품대금이 관련된 서비스에 대하여 합의된 여부와 상관없는 서비스계약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매매, 디지털 콘텐츠

의 공급 및 관련된 서비스 제공 이외의 요소를 포함한 혼합목적의 계약과, 기업이 연지급·대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융상의 약정형식으로 소비자에게 신용을 허여하거나 허여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B2C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Loos, 2014).

그렇지만 동일 종류의 물품·디지털 콘텐츠 또는 관련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소비자가 그러한 물품·디지털 콘텐츠 또는 관련된 서비스에 대하여 공급기간 동안 분할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계약에는 다름없이 적용된다.

## 5. 계약당사자 간 합의의 요건

CESL은 물품의 매도인 또는 디지털 콘텐츠 공급자가 기업인 경우에만 적용되나, 이 경우 계약당사자가 모두 기업인 경우 적어도 일방이, 소위 협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은 250인 미만의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고, 연매출액이 5천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거나 또는 연간 대차대조표 총액이 4천3백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나아가 영업소가 마땅히 회원국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CESL, Regulation Art. 7).

한편 CESL은 계약당사자의 자치에 의한 합의를 요건으로 하며, 이 경우 B2C 관계에 있어서 CESL 적용에 대한 합의는 소비자의 동의를 계약체결을 위한 합의를 표시한 진술과 별도로 명시적인 합의로서 제공된 경우에만 유효하다. 또한 기업은 소비자에게 그러한 합의의 요약서를 ‘내구성이 있는 매체’(durable medium)로 제공하여야 한다. 아울러 B2C 간의 관계에 있어서 CESL은 부분적이 아닌 전체적으로 선택되어야 한다(Whittaker, 2012).

## 6. 표준정보통지

CESL에 규정된 계약 전 정보제공의무 이외에 B2C 관계에 있어서 기업은 ‘부속서 II’상의 정보통지서를 확실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합의 전에 CESL의 적용에 따른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만약 CESL의 사용에 대한 합의가 전화 또는 소비자에게 정보통지를 제공하기가 불가능한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체결되는 경우 또는 기업이 정보통지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는 당해 합의에 관한 여하한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이 경우 정보통지가 전자적인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 하이퍼링크가 있거나 그 밖의 웹사이트가 현시(display)되어야 한다(Hesselink, 2012).

# IV. 국제상사계약에의 적용가능성

## 1. 법적 안정성

### 1) CISG와의 관계

CESL은 당사자의 의무 및 불이행에 관한 법적 기준을 여타 국제상사계약법규범이하 CISG, PECL, PICC 등에 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를테면 CESL은 의사표시하자, 계약의 현저한 불균형 내지 불공정성, 표준약관에 관한 법률효과, 소유권 또는 담보권의 이전에 대한 법적 기준, 계약의 유효성을 포함하여 서비스 계약 및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한 계약, ‘서식의 교전’(battle of forms)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에 결부할 수 있다. 곧 CESL은 종전의 국제상사계약법규범에 비하여 매우 포괄적이고 응



집된 규칙을 존치해 두고 있다(Loos, 2012; Zoll, 2012).

그렇지만 규정체계 전반을 고려할 때, 강행규칙 내지 소비자보호 등의 사안을 제외하고 당해 법규범과의 입법체계 내지 조문내용의 차이는 매우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역내 법원이 국제사법규칙에 따라 특단의 국제상사계약법규범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CESL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는 다분하다는 시각에서 CESL의 법적 지위를 엿볼 수 있다(Aksoy, 2013).

그러나 CESL이 EU 역내 물품 및 이와 관련한 서비스의 매매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의 자유로운 상거래 활동을 견인하기 위함에 취지를 두고 제안되었다고는 하나, 이것이 본래의 의미를 되살려 그 순기능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이 같은 시각은, 예컨대 법적용상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한,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 협약'(이하 'CISG')과의 충돌을 함의한다. 곧 CISG는 국제적으로 널리 수용된 통일법으로서 '계약국'(contracting state)에 관한 한 다름없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EU 회원국 대부분은 계약국으로서 CISG의 규율하에 있게 된다. 만약 역외에 영업소를 보유한 기업이 역내기업과의 상거래에 있어 CISG의 적용범위에 기하여 계약의 성립, 이행, 종료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그 법적 기준과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개입될 수 있는 개연성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역내 기업에게 있어서는 CESL의 적용을 선호할 것임을 시사한다(Pavelts and Sein, 2014). 특히나 역내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라 본다. 왜냐하면 CESL은 본래 그 자체가 협상력이 취약한 경제적 약자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해 사안은 개별회원국의 법원에 의하

여 '사실의 문제'(the matter of facts)로 다루어지겠지만 무엇보다도 법적 안정성에 기하여 역외기업에게는 특단의 장애로 기능할 수 있는 개연성이 클 것이라 생각된다.

## 2) PECL과의 관계

종래 EU 회원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정법을 마련하기 위한 법통일화 작업은, 그 과정에서 회원국 간에 직접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규칙'(regulation)과 '지침'(directive) 등의 공표를 통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공표된 규칙과 지침 등이 단순히 각국의 국내법에 수용되어 조화되는 것보다는 하나의 실정법으로 통일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이를 위하여 EU 각국의 사법체계에 대한 법이론적·비교법적·법체계적 공동작업을 통해 새로운 유럽의 법문화 창출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제고되었는데, 1982년 '유럽계약법위원회'(Commission on European Contract Law, 이하 'CECL')에 의해 성안된 '유럽계약법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이하 'PECL')은 EU 역내 계약법의 일반원칙이라는 법적 지위를 통하여, 회원국의 국내법을 초월한 통일규칙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Shim Chong-Seok, 2013).

PECL은 CESL과 마찬가지로 역내 회원국 간 상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법적 기반 제공, 계약법의 법리적 기초와 통일적 해석 기준의 정립, 각국 법원 및 중재판정부의 판결·판정 시의 지침제공, 역내 법체계 간의 타협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역할, 향후 유럽 통일계약법전의 입법기반 형성 등을 의도하여 성안된 특징이 있다. 곧 PECL은 계약법의 일반원칙 또는 EU 역내 상관습법 및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계약법원칙으로서 국제상사계약의 법원으로서 자리매김 되어

있는 차제에 있다. PECL은 EU 역내에서 회원국 간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계약법 원칙을 통일하여 제시한 것으로, 그 적용범위는 순수한 국내계약이나 상인과 소비자 간의 계약 등을 포함한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

CESL의 입법연혁에 비추어 EC는 2001년과 2003년에 각각 PECL과의 법적 기준에 대한 검토작업에 임했는데, 그 결과 무엇보다도 PECL에서 수용하고 있지 못했던 역내 통일법으로서의 지위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 내지 표준계약서식 및 그 내용의 정형화, 나아가 전자적 통신수단에 의한 전자상거래 등에 관련한 특단의 합의를 통해 종래 PECL의 보완을 꾀하였다(Adar and Sirena, 2013).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CFR과 DCFR의 탄생배경으로서 기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ESL은 경제적 약자로서 소비자 내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입법상의 보완을 추보하여 종전의 PECL을 병합하고 있다고 보아 그 입법내용은 추보의 내용을 제외하고 PECL과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이는 별도의 EU 규정에 예속된 일련의 소비자보호법을 통해서도 그 법적 실익을 표창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당해 법적 제정취지에 기한 의구심 내지 법적 안정성 및 법적 용상의 역기능을 시사한다.

### 3) PICC와의 관계

EU 회원국을 공히 CISG 체결국으로 취급할 경우 역내에 소재한 기업에게는 적어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한, CISG가 다름없이 적용된다. 이는 역외에 ‘영업소’(business place<sup>10)</sup>)를 보유한 체결국의

기업 또한 매한가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CISG의 해석원칙에 기하여(Art. 7),<sup>11)</sup> 만약 CISG에서 명시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CISG가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하여야 함을 고려할 때, 이 경우 PICC와 PECL은 법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입법연혁에 비추어, CISG는 당초 입법과정에서 국가별 내지 법계 간 타협의 산물이었기에 개별조문의 구성이 대부분의 국가 내지 법계가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기초적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또한 특단의 법적 사안에 관해서 CISG는 의도적으로 이를 도외시 할 수밖에 없는 입법적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나아가 CISG는 대륙법의 법적 기초를 적의 수용하여 입법상 법기능만을 중시한 나머지 국제상거래의 실제에는 그다지 친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미법 국가의 경제체제나 법체계에 대한 법적 배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사법통일국제협회’(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이하 ‘UNIDROIT’)는 ‘경성법’(hard law)이 아닌 ‘연성법’(soft law)으로의 회귀를 통해 우회적으로 정식 입법절차에 의한 구속력 있는 법규범을 성안하는 대신, 국제상거래를 보편타당하게 규율할 수 있는 일반원칙으로 체계화하여 이를 소위 ‘재기술’(restatement)의 형태로 입안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곧 UNIDROIT는 국제상거래에

10) CESL에서는 ‘영업소’를 ‘business premises’로 표현하고 있음을 참고한다(CESL, Regulation Art. 2(r)).

11) CISG, Art. 7(협약의 해석원칙): “(1) CISG의 해석에 있어서는 협약의 국제적 성격과, 적용상의 통일성 및 국제상거래에서 신의의 준수를 증진할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CISG에 의해 규율되는 사항에 관한 문제로서, CISG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CISG가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며, 만약, 그러한 원칙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의 규칙에 의해 적용되는 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있어 실제적·현실적으로 설득력을 갖는 일반원칙을 명문으로 기술함으로써 국제상사 계약에 입한 계약당사자가 이를 계약내용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여, 이로부터 사실상 법원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고려하였다. 그 입법결과로 표창된 것이 곧 PICC이다.

PICC의 채용은 그 저변에 기존의 국가법 질서에 따른 계약의 규율을 상징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약이 준거하는 규범을 자국법도 상대국의 법도 아닌, 실제적 무역거래에 적용 가능한 범세계적인 규범으로서, 이를테면 법의 일반원칙이나 '상인법'(*lex mercatoria*)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제상거래의 새로운 규범으로서 자율성이 높은 국제계약법과 같은 일련의 방식을 따른 것이다. 따라서 PICC는 상인법적 시각에서 또 하나의 법통일화 작업의 결실로서 그 의의를 부각할 수 있다 (Michaels, 2014).

요컨대 PICC는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각국의 국내법이나 국제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보충적 기준 내지 표준으로서, 당사자에게는 계약서 작성의 지침으로서, 각국 법원이나 중재기관에게는 국제상사계약에서 야기되는 분쟁의 해결책으로서 이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에 그 주된 기능을 두고 있다.

공표된 이후, 국제상사계약의 법원으로 자리매김하였던 PICC(2010)는 전통적 계약법에서 취급하지 않았던, 전자적 계약체결, 대리인의 권한, 제3자의 권리, 상계, 채권양도, 채무이전, 계약의 이전 및 제소기간 등의 내용들을 추가하고 있다. 요컨대 PICC의 기능 내지 목적은 국제상사계약의 준거법으로서 적용할 수 있다는 점, 국제적 통일법 및 국내법의 해석 및 보충수단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점, 계약법이나 특수한 거래에 관한 입법의 '모델법'(model law)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부터 그

의의를 구할 수 있다(Heutger, 2012). 이러한 PICC의 법적 지위를 고려할 때, 이는 PECL에서와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추론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환언하면 그것은 앞서 적시한 바와 같이 EU 공통매매법으로서가 아닌 일련의 소비자보호법에 상당한 CESL의 전향적 회귀를 함의한다.

## 2. 예견가능성

만약 우리기업이 EU 역내 중소기업과의 상거래에 있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은 CISG의 적용은 차지고서라도, 만약 CISG에 의해 규율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문제로서 특단의 일반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 경우 우리기업은 CISG 제7조에 의거,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PICC 또는 PECL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역내 회원국이 CESL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처지가 다르게 진전될 개연성이 있다. 곧 특정 회원국의 법원에 의하여 국내 실정법으로서 CESL이 적용이 우선시 될 수 있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기업에게 있어서는 CESL 내에 산재한 강행적 성격의 규정,<sup>12)</sup> 역내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한 특단의 규정<sup>13)</sup> 등에 의해 예견가능성에 기한 상당

12) 이 경우 '강행규정'(mandatory nature)은 '당사자가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또한 그 효과를 변경할 수 없는 규정'을 말한다(CESL, Regulation Art. 2(v): "any provision the application of which the parties cannot exclude, or derogate from or the effect of which they cannot vary"]. 이는 CESL 내에 산재해 있는데, 이를테면 Art. 22, Art. 27, Art. 47, Art. 81, Art. 108, Art. 171, Art. 177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13) 역내 중소기업 내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CESL 내의 우월적 규정내용은, Art. 7(개별적으로 협상

한 법적 혼선이 예상된다(Bisping, 2013). 이 경우 당해 법적 사안은 개별회원국의 법원에 의해 사실의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보아, 무엇보다도 우리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법적 지위에 놓여 있음이 자명할 것으로 이에 대한 특단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달리 CESL의 명료한 이해를 시사한다.

### 3. 합목적성

앞서 본 바와 같이 EC에서는 CESL의 법적 지위를 PECL과 달리하여, 협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내지 상대적 약자로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 두고 있으나, 재차 논하기에 이는 CESL이 아닌 역내 소비자보호에 관련한 일련의 통일법의 제정을 통해서도 여하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는 CESL을 TEFU 예하 일련의 부속규정으로서도 공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EC는 CESL을 역내 회원국별 실정법에 선택적으로 보충 또는 채택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과연 CESL이 역내 통일매매법으로서의 지위를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도 그 처지는 매한가지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B2C 매매는 차치하고서라도 CESL의 적용범위에 있어서도 시의적으로 급진전하고 있는 전자적 통신수단에 의한 디지털 콘텐츠의 매매까지도 수용하고 있다는 시각에서 더욱 그러하다. 한편으로 CESL은 외견상 PECL에 수용된 제반 법리를 가감없이 계수하여 당초 목적을 의도하고 있는 바, 합목적성 차원에서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한, 소비자보호 및 이에 준하는 규정내용을 제외하고 CESL에 수용된 제반 규정체계 내지 조문내용 등에 있어서는 특단의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된다.

## V. 맺음말

본고는 EU 역내 통일매매법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예상하고 있는 CESL의 위상을 중시하여, 논제의 범위내에서 CESL의 의의와 주요 내용 및 CESL의 법적 지위와 특징 그리고 국제상사계약에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당해 논점에 대한 유의점 내지 시사점을 분석한 논문이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CESL의 의의와 주요 내용에 기하여, CESL은 종래 EC에 의한 CFR과 DCFR을 입법배경으로 물품의 매매,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 이와 관련한 서비스의 매매 등에 관한 법적 기준을 역내 회원국의 실정법에 선택적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제안되었고, 본문 및 부속서의 형태로 최종 마무리되었다. 이 경우 CESL은 총칙 16개 조항 및 일반규정으로서 총 18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EU 의회에 제안되었다. CESL은 기업은 물

되지 않은 계약내용), Art. 9(혼합목적의 계약), Art. 10(통지), Art. 13(원거리 및 장외 계약체결 시 정보제공의무), Art. 14(대금, 추가수수료 및 비용에 대한 정보), Art. 17(원거리 또는 장외계약 체결 시 취소권에 대한 정보), Art. 18(장외계약: 추가정보 요건 및 확인), Art. 19(원거리 계약: 추가정보 및 그 밖의 요건), Art. 20(원거리 및 장외 계약 이외의 계약체결 시 정보제공의무), Art. 21(입증책임), Art. 24(전자적인 방법으로 체결된 원거리 계약에서 정보제공의 추가의무), Art. 26(입증책임), Art. 28(제공된 정보가 정확한지 확보할 의무), Art. 29(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Chap. 4 B2C 간 원거리 및 장외계약 취소권, Art. 40 내지 Art. 46), Art. 64(소비자에게 유리한 해석), Art. 65(계약내용의 공급자에게 불리한 해석), Chap. 7(계약내용의 효력, Art. 66 내지 Art. 78), Chap. 8(불공정한 계약내용, Art. 79 내지 Art. 86) 및 자연이자에 관한 일반규정(Art. 166 내지 Art. 171) 등이다.

론이고 소비자 계약을 포함하여 EU 역내 국가 간 그리고 역외 국가와의 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고안되었는데, 당초 CESL은 이처럼 광범위한 모든 사항을 일일이 규정하기 위한 것에 목적을 둔 법이 아니고, 오로지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이해보전을 위한 특단의 입법을 국내법의 일부로 보충·선택할 수 있도록 의도되었다.

둘째, CESL의 적용범위는 이상의 적용대상에 기하여 당해 기업의 영업소가 각각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무역계약은 적어도 일방이 회원국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 소비자의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 또는 물품의 인도지 또는 대금청구지가 기업의 영업소 이외의 국가에 소재하고 또한 이들 국가 중 하나는 회원국이어야 한다. 여기서 CESL이 적용되는 계약의 종류는 매매 계약을 위시하여 전자상거래의 경우 작성·저장·전송되고 재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을 위한 계약에 한정하고 있다. 한편 이상의 계약을 제외한 혼합목적의 계약은 적용되지 않으며, 기업과 소비자 간의 계약에서 신용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셋째, CESL은 규율범위에 있어 EU 역내 계약법을 개정하지 않고, 각 회원국에서 채택하는 경우 특별법의 법적 지위를 보유했을 수 있도록 고안되었고, 이로써 개별회원국의 국내법과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기에 배려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해결책은 회원국의 국내법 간 법리적 차이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장애를 제거하고 또한 무역계약체결의 과정에서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법적 상이 내지 복잡성에 기한 추가비용 절감, 소비자의 권리보호 및 구매력 상승 등의 효과를 배경에 두고 있다. 한편 CESL은 역내 거래에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 개별회원국 국내법에 의해 다루어지는 분야는 여하히 배

제된다. 따라서 CESL은 계약당사자의 합의를 기초로 각국 법체계 및 상관습 등을 방해하지 않고 역내 계약법의 최소기준을 명정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그 실효성을 부각할 수 있다.

넷째, 목적 및 대상에 기하여, CESL은 계약주체로 하여금 EU 통일계약법으로서 이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역내 단일시장의 설립조건 및 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에 두고 있다. 나아가 물품매매 및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 및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무역거래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당해 분야에서 법적 확실성과 예견가능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제거함으로써 역내 기업들로 하여금 CESL을 통해 실질적 기대의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통일법으로서의 지위를 표창하고 있다.

다섯째, 법적 안정성에 기한 국제상사계약 법규범과의 관계성에 있어, CESL은 당사자의 의무 및 불이행에 관한 법적 기준에 관하여 여타 국제상사계약법규범에 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 특징이 있다. 곧 의사표시하자, 계약의 현저한 불균형 내지 불공정성, 표준약관의 삽입에 대한 법률효과, 소유권 또는 담보권의 이전에 대한 법적 기준, 계약의 유효성을 포함하여 서비스 계약 및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한 계약, 서식의 교전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에 결부할 수 있다. 한편 CISG는 국제적으로 널리 수용된 통일법으로서 만약 역외에 영업소를 보유한 기업이 역내기업과의 상거래에 있어 CISG의 적용범위에 기하여 계약의 성립, 이행, 종료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그 법적 기준과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개입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당해 사안은 개별회원국의 법원



에 의하여 사실의 문제로 다루어지겠지만 무엇보다도 법적 안정성에 기하여 역외기업에게는 특단의 장애로 기능할 수 있는 개연성이 클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PECL과의 연관성에 기하여, 한편 CESL은 종래 PECL에서 수용하고 있지 못했던 역내 통일법으로서의 지위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 내지 표준계약서식 및 그 내용의 정형화, 나아가 전자적 통신수단에 의한 전자상거래 등에 관련한 특단의 함의를 통해 종래 PECL의 보완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CESL은 경제적 약자로서 소비자 내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입법상의 보완을 후보하여 종전의 PECL을 병합하고 있다고 보아 그 입법내용은 후보의 내용을 제외하고 PECL과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다른 한편 PICC와의 관계에 있어, PICC는 CISG의 해석원칙에 기하여 CISG의 보충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는 그 법적 기능상 일반원칙으로서 기능함을 의미한다. PICC의 채용은 그 저변에 기존의 국가법질서에 따른 계약의 규율을 상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약이 준거하는 규범을 자국법도 상대국의 법도 아닌, 실제적 무역거래에 적용 가능한 범세계적인 규범으로서, 일련의 국제계약법과 같은 방식을 따른 것이다. 이러한 PICC의 법적 지위를 고려할 때, 이는 PECL에서와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추론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CESL이 EU 공통매매법으로서가 아닌 일련의 소비자보호법에 상당한 CESL의 전향적 회귀를 함의한다.

여섯째, 예견가능성의 시각에서, 만약 역내 회원국이 CESL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원국의 법원에 의하여 국내 실정법으로서 CESL이 적용이 우선시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기업에게 있어서는 CESL 내에 산재한 강행적 성격의 규정, 역내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한 특단의 규정 등

에 의해 예견가능성에 기한 상당한 법적 혼선이 예상된다. 이 경우 당해 법적 사안은 개별회원국의 법원에 의해 사실의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보아, 무엇보다도 우리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법적 지위에 놓여 있음이 자명할 것으로 이에 대한 특단의 주의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합목적성의 견지에서 CESL은 TEFU 예하 일련의 부속규정으로서도 공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ESL은 외견상 PECL에 수용된 제반 법리를 가감없이 계수하여 당초 목적 실현을 의도하고 있는 바,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한, 소비자보호 및 이에 준하는 규정내용을 제외하고 CESL에 수용된 제반 규정체계를 내지 조문내용 등에 있어서는 특단의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된다.

## References

- Adar, Y. and P. Sirena (2013), "Principles and Rules in the Emerging European Contract Law: From the PECL to the CESL, and Beyond", *European Review of Contract Law*, 9(1), 1-37.
- Aksoy, H. C. (2013), "Status Quo Bias, CISG and the Future of the Common European Sales Law", *European Business Law Review*, 24(4), 459-465.
- Basedow, J. (2012), "An EU Law for Cross-Border Sales Only-Its Meaning and Implications in Open Markets", *Liber Amicorum Ole Lando*, 27-44.
- Beale, H. (2012), "A Common European



- Sales Law (CESL) for Business-to-Business Contracts: Pros and Cons", *Annales Universitatis Scientiarum Budapestinensis de Rolando Eötvös Nominatae*, 53, 133-151.
- Bisping, C. (2013), "The Common European Sales Law, Consumer Protection and Overriding Mandatory Provisions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62(2), 463-483.
- Borchardt, K. D. (2010), *The ABC of European Union Law*, European Union, 87-97.
- Clive, E. (2015), "Proposal for a Common European Sales Law Withdrawn", *European Private Law News*, 3, 1-12.
- Epstein, R. A. (2013), "Harmonization, Heterogeneity and Regulation: CESL, the Lost Opportunity for Constructive Harmonization", *Common Market Law Review*, 50, 207.
- European Commission (2011),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 Common European Sales Law*, 8-17.
- Grundmann, S. (2013), "Costs and Benefits of an Optional European Sales Law (CESL)", *Common Market Law Review*, 50(1), 225-242.
- Hesselink, M. W. (2012), "How to Opt into the Common European Sales Law? Brief Comments on the Commission's Proposal for a Regulation", *European Review of Private Law*, 1, 195-212.
- Heutger, V. (2012), "The UNIDROIT Principles 2010: Towards a 'Global' Law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European Review of Private Law*, 20(3), 889-897.
- Kim, Chin-Woo (2012), "Inhaltskontrolle im DCFR",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38, 209-250.
- Kornet, N. (2012), "The Common European Sales Law and the CISG-Complicating or Simplifying the Legal Environment?", *Maastricht European Private Law Institute Working Paper*, 4.
- Kuipers, J. J. (2008), "New Provisions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the Treaty of Lisbon", *Maastricht J. Eur. & Comp. L.*, 15, 109.
- Loos, M. B. (2012), "Standard Contract Terms Regulation in the Proposal for a Common European Sales Law", *Amsterdam Law School Research Paper*, 65, 776-796.
- Loos, M. B. (2014), "The Regulation of Digital Content B2C Contracts in CESL", *Studies in European Economic Law and Regulation*, 3, 611-634.
- Michaels, R. (2014), "The Unidroit Principles as Global Background Law", *Uniform Law Review-Revue de droit uniforme*, 19(4), 643-668.
- Micklitz, H. W. (2012), "The Commission Proposal for a Regulation on a Common European Sales Law (CESL); Too Broad or not Broad Enough?", *Florence Deapartment of Law*, 3, 16-18.
- Paek, Kyoung-Il (2013), "Der Vertragsschluss

- im Gemeinsamen Europäischen Kaufrecht", *Journal of Comparative Private Law*, 20(2), 433-476.
- Pak, Hee-Ho (2014), "Right to Withdraw in CESL", *Journal of Civil Law*, 66, 365-403.
- Pavelts, A. and K. Sein (2014), "The Buyer's Right to Require Reimbursement for Repair Costs of Defective Goods under the CISG, the CESL, and Estonian Law", *Juridica International*, 21, 147-158.
- Shim, Chong-Seok (2013), *Commentary to Practical Applications of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 Seoul: Sam Young Sa, 37-39.
- Shin, Dong-Hyeon (2014), "Conflicting Standard Contract Terms ('Battle of the Forms') in the CESL", *Journal of Civil Law*, 66, 447-473.
- Sung, Jun-Ho (2014), "Unfair Contract Term in CESL", *Journal of Civil Law*, 66, 405-446.
- Whittaker, S. (2012), "The Proposed 'Common European Sales Law: Legal Framework and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The Modern Law Review*, 75(4), 578-605.
- Wymenga, P., V. Spanikova, A. Barker, J. Konings and E. V. Canton (2012), "EU SMEs in 2012: At the Crossroads. Annual Report o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the EU", *Report for the European Commission 2011/2012*.
- Zoll, F. (2012), "The Binding Power of the Contract: Protection of Performance in the System of the Common European Sales Law"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olicy*, 11(3), 259-265.